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가.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,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.
- 나.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-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¹⁾ 도입되었고,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및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.
※ 장기요양요원: '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'로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조리원 등이 이에 해당함.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조제5호)
-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어르신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정서적 활동 등이 포함되는 휴먼서비스로서 서비스 질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, 장기요양요원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25.2%,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는 16.0%, 성희롱 및 성적 신체접촉 등 성폭력을 경험한 자는 9.1%에 이르는 등 권익보호가 절실한 상황임.
-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,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.
-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, 숙련된 인력의 소실과 신규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.

1)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

- 이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- ※ 장기요양요원 관련 조례는 현재 13개 광역 시·도에서 제정·시행중에 있으며, 미제정 시·도는 부산, 세종, **충북**, 경북 등 단 4곳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 및 제5조는,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함)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지원계획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상 불필요한 이중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함.
 -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항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는,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, 노동환경 개선 사업,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.
- 안 제7조는,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 등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.

-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,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의 설치, 기능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센터의 설치, 기능에 관한 조항들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 - 또한, 안 제10조(운영의 위탁) 조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²⁾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 - ※ 현재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시·도는 총 5곳(서울, 인천, 경기, 경북, 경남)임.
 - 비용추계서에 따르면, 충북의 경우 2023년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.
 - 센터의 운영을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기 보다는 2023년 설치 예정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